Powerful pohang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람					



포항시보

제 855호 2011. 11 8(화)

▼ 조 례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65호) ······	2
o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66호)······	7
ㅇ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67호)	10
ㅇ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제1068호)	20
ㅇ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69호)	22
ㅇ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70호)	30
ㅇ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71호)	50
ㅇ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72호)	57
◀ 공 고 ▶	
ㅇ공 인 공 고(제2011-1027호)	60

회				
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홍보담당관(☎270-2233)

190×268 신문용지 70g/m²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8일

포항시장 박 승 호

포항시 조례 제 1065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7.5% 이내	30% 이내	24.5% 이내	10%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5% 이내	13.5% 이내	20% 이내	34% 이내	28%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	2직	지	도직
下世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 이내	34%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1,960	623	37	210	260	306	524
정무직 계	1	1	_	-	-	-	-
시 장	1	1	_	-	_	-	-
일반직 계	1,577	504	26	133	160	262	492
2 급	1	1	_	-	_	-	_
3 급	_	_	_	_	_	_	_
4 급	12	5	1	2	2	2	_
5 급	96	34	4	5	12	12	29
6급 이하 계	1,468	464	21	126	146	248	463
별정직 계	26	1	_	24	1	-	_
5급상당							
6급상당이하 계	26	1		24	1		
연구직 계	4	1	_	-	3	-	-
연구관							
연구사	4	1		_	3		
지도직 계	40	-	_	40	-	-	-
지도관	3	_	_	3	_	_	_
지도사	37	_	_	37	_	_	_
기능직 계	312	116	11	13	96	44	32

신·구조문 대비표

햀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7%	27.5%	30%	24%	10.5%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13%	18%	32%	33%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구청	읍면 동
총계	1,960	623	37	210	260	306	524
:							
일반직 계	1,555	494	24	133	156	258	490
:							
6급이하	1,446	454	19	126	142	244	461
:							
기능직계	334	126	13	13	100	48	34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

안

1. 일반직공무원

개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7%	27.5%	30%	24.5%	10%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5%	13.5%	20%	34%	28%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구청	읍면 동
총계	1,960	623	37	210	260	306	524
:							
일반직 계	1,577	504	26	133	160	262	492
:							
6급이하	1,468	464	21	126	146	248	463
:							
기능직계	312	116	11	13	96	44	32

1. 개정이유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11. 08. 24.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60명 → 1,960명(변동없음)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1.555명 → 1.577명(+22)

• 일반직 6급이하 : 1,446명 → 1,468명(+22)

○ 기능직 : 334명 → 312명(△22)

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ㅇ 일반직

구분	총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100%	1%이내	7%이내	27.5%이내	30%이내	24%이내	10.5%이상
개정	100%	1%이내	7%이내	27.5%이내	30%이내	24.5%이내	10%이상
증감	_	_	_	_	_	증0.5%	감0.5%

_ ㅇ 기능직

구분	총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100%	4%이내	13%이내	18%이내	32%이내	33%이상
개정	100%	4.5%이내	13.5%이내	20%이내	34%이내	28%이상
증감	_	증0.5%	증0.5%	증2%	증2%	감5%

- 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ㅇ 일반직

구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현행(6급이하)	1,446	454	19	126	142	244	461
개정(6급이하)	1,468	464	21	126	146	248	463
증감	증22	증10	증2	_	증4	증4	증2

○ 기능직

구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현행	334	126	13	13	100	48	34
개정	312	116	11	13	96	44	32
증감	감22	감10	감2	1	감4	감4	감2

마. 소요경비 - 184,212천원

• 기능9급 → 일반직 8급 : (2,344-1,801)×12월× 6명 = 39,096천원

• 기능10급 → 일반직 8급 : (2,344-1,291)×12월×11명 = 138,996천원

• 기능10급 → 일반직 9급 : (1,801-1,291)×12월× 1명 = 6,120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1년 공무원 1인당 직접 경비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8일

포항시 조례 제 1066호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항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 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문의·신고·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 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콜센터는 포항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 4.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민간위탁사무 중 "새마을봉사과"를 "새마을평생학습과"로 하고 같은 란위탁사무명에 "4. 민원콜센터 설치·운영"을 추가한다.

1. 제정이유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포항시 민원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원콜센터를 정의하고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콜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라.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 임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8일

포항시 조례 제 1067호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포항시"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모든 자를"을 "모 든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를 "전자우편주소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게시자확인이 불가능한"을 "사실확인이 곤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장난성의 내용 등"을 "장난성의 내용, 게시판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상업성의 내용 등"으로,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제8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3조 내지 제34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73조에 의해"를 "제89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8조"를 "제3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경제노동과"를 "국제협력업무부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마일리지 부여와 차감 기준 (제13조의3제2항 관련)

구 분	항 목	점 수	횟수/제한기준
마일리지	회원가입(최초가입시)	250	1회/가입시
부 여	회원로그인	25	1회/1일
	시정메일링 신청	300	1회
	사이버설문/토론 참여	100	1회/1일
	시민아이디어 공모 (채택시)	100 (500)	1회/1일
	홈페이지 오류사항 신고(채택시)	100	1회
	시정참여 및 유익할 글 등록후 네티즌 추천이 있는 경우	100	1회
	동영상 및 포토갤러리 등록 후 네티즌 추천이 있는 경우	200	1회
	매월초 카페별 회원수*50 점	최대 20,000	마일리지 이월 안됨
마일리지	문자메세지 보내기	-25	1건
차 감	음성메세지 보내기	-50	1건
	팩스메세지 보내기	-50	A4 1장

[※] 단, 등록한 글 삭제 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차감됩니다.

[별표 2]

이벤트 행사시 시상금(품) 지급기준 (제13조의3제5항 관련)

행사목적	지급대상	행사시기	시상금(품) 내용 (1회당)
정기이벤트	참가자(추첨)	반기별 1회(년2회)	당첨자(10명)3만원상당
전자학습활성화	학습우수자	반기별 1회 (년2회)	1등(1명) 10만원상당 2등(5명) 5만원상당 3등(20명) 3만원상당 장려(55명) 1만원상당
설문/퀴즈 참여	참가자(추첨)	발생시 (년12회 이내)	당첨자(10명) 1만원상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포항시</u>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4. "이용자"라 함은 <u>시</u> 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u>모든 자를</u> 말한다. 5. ~ 9.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1. ~ 7. (생 략) 8.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 ④ (생 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 략) ②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건 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 시한 자료중 다음 <u>각호의 1에</u> 해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현 행	개 정 안
당하는 자료는 삭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게시된에 당개하거나 게시인 자리 전화번호나 <u>전자우편주소가 명확</u> <u>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u> 삭제한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u>전</u> 자우편주소로
 7. (생 략) 제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 단체의 정식요청에 의한 경우 (생 략) 소신 설〉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1. ~ 7. (현행과 같음) 8. 사실확인이 곤란한 9. (현행과 같음)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 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11. 그 밖에장난 성의 내용, 게시판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상업성의 내용 등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3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시장은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현 행	개 정 안
「전자정부법」제33조내지 제34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u></u>
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	<u> </u>
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	④
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	· · · · · · · · · · · · · · · · · · ·
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명법」
의 인증 또는 <u>기타</u> 관련법규에 의	<u>그</u> 밖에
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	
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	
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전	
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제89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	
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전자정부법」 <u>제28조</u> 에	②제31조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마일리지 제도 및 이벤트	제13조의3(마일리지 제도 및 이벤트
운영)	운영)
① ~ ⑤ (생 략)	· 0/ ① ~ ⑤ (현행과 같음)
₩ ₩ (0 7 /	₩ (12 64 ED)

현 행	개 정 안
⑥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책사업·계획의 홍보와 각종 행사의 개최 홍보 및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 행 할 수 있다.	⑥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	③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경제노동과</u>	국제협력업무부서
를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	
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	
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마일리지 부여와 차감 기준 (제13조의 3제2호 관련)

구 분	항 목	점 수	횟수/ 제한기준
	회원가입(최초가입시)	200	1회/가입시
	홈페이지 개설·개편 기념 오픈	50	1회/오픈시
	회원로그인	10	1회/1일
마일 리지	시정메일링 신청	100	1회/1일
부 여	시정토론/사이버설문 참여	50	1회/1일
	시민아이디어 공모 참여	100	1회/1일
	기업/상가정보 등록	100	1회/1일
	지역모니터 가입 및 글 등록	150	1회/1일
	포항지식IN 답변	50	1회/1인
	포항지식IN답변 우수 선정시	200	선정시
	문자메세지 보내기	-25	1건
마일 리지	음성메세지 보내기	-50	1건
차 감	팩스메세지 보내기	-50	A4 1장
	시민배너/지역상품홍보의뢰시	-200	1건

※ 단, 등록한 글 삭제시 및 시정메일링 거부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차감됩니다.

[별표 2]

이벤트 행사시 시상금(품) 지급기준 (제13조의3제5항 관련)

행사목적	지급대상	행사시기	시상금(품) 내용 (1회당)
홈페이지 개편기념, 홈페이지 활 성 화	우 수 참여자	홈 페 이 지 개편시 (1회)	1등(1명) 10만원상당 2등(2명) 5만원상당 3등(10명) 3만원상당
전자학습 활 성 화	학 습 우수자	반기별 1회 (년2회)	1등(1명) 10만원상당 2등(5명) 5만원상당 3등(20명) 3만원상당 장려(55명) 1만원상당
수능방송 활 성 화	학 습 우수자	반기별 1회 (년2회)	1등(1명) 10만원상당 2등(5명) 5만원상당 3등(20명) 3만원상당 장려(55명) 1만원상당

【별표 1】

마일리지 부여와 차감 기준 (제13조의 3제2호 관련)

구	항 목	점	횟수/
분	0 7	수	제한기준
	회원가입(최초가입시)	250	1회/가입시
	회원로그인	25	1회/1일
마일 리지	시정메일링 신청	300	1회
부 여	시정토론/사이버설문 참여	100	1회/1일
	시민아이디어 공모(채택시)	100 (500)	1회/1일
	홈페이지 오류사항 신고(채택시)	100	1회
	시정참여 및 유익할 글 등록후 네티즌 추천이 있는 경우	100	1회
	동영상 및 포토갤러리 등록 후 네티즌 추천이 있는 경우	200	1회
	매월초 카페별 회원수*50 점	최대 20,0 00	마일리지 이월안됨
	문자메세지 보내기	-25	1건
마일 리지	음성메세지 보내기	-50	1건
차 감	팩스메세지 보내기	-50	A4 1장

※ 단, 등록한 글 삭제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차감됩니다.

[별표 2]

이벤트 행사시 시상금(품) 지급기준 (제13조의3제5항 관련)

행사 목적	지급대상	행사시기	시상금(품) 내용 (1회당)
정 기 이벤트	참가자 (추첨)	반기별 1회 (년2회)	당첨자(10명) 3만원상당
전 자 학 습 활성화	학 습 우수자	반기별 1회 (년2회)	1등(1명) 10만원상당 2등(5명) 5만원상당 3등(20명) 3만원상당 장려(55명) 1만원상당
설 문/ 퀴 즈 참 여	참가자 (추첨)	발생시 (년12회 이 내)	당첨자(10)명 1만원 상당

1. 개정이유

현재 운영중인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 규정 중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규정, 마일리지 제도, 이벤트 행사시 시상금(품) 지급기준 개선 및 변경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관련 상위법령 명칭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시 조례 개정
- 나.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항 변경 및 추가 (안 제6조)
 -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 글 삭제 규정 마련
- 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부서 조항 변경(제16조)
- 라. 【별표1】마일리지 부여와 차감기준 개정(제13조의3제2항)
- 마. 【별표2】이벤트 행사시 시상금(품) 지급기준 개정(제13조의3제5항)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8일

포항시 조례 제 1068호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

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1 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	
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u>500미터</u> 이내의 범위	<u>1킬로미터</u>
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부칙 제3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8일

포항시 조례 제 1069호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기금"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 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 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9인"을 "9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기 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혂 햇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 항시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 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 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 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 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 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 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 1. "영업자"라 함은 <u>영 제7조의</u> <u>규정에 의한</u>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다.
-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 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 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 다.
- 3. "대여"라 함은 <u>시장</u>이 <u>기금</u>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 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 ----- <u>「식품위생법 시행</u>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 조에 따른 ----
-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설치·보유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3. -----포항시장(이하 "시 장" 이라 한다)--포항시 식품진 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현 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조성) (생략)

- 1. (생략)
- 2. <u>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u> 징 수한 과징금
- 3. ~ 4.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 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 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
-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6. 기금의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
-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 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
 을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
 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 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현 행	개 정 안
<u>고 인정하는 사업</u> <u>〈신 설〉</u> 〈신 설〉	사업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의 그 규에 극됩되장, 국민 8 8 8 4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1. (생 략) 2. 복지환경국장 3. ~ 4. (생 략)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1.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기금의 용 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제7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u>제4조에 따른</u>

현 행	개 정 안
는 사항 2. (생 략) 3. <u>기타</u>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의</u>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u>1인</u> 을 둔다. ② 간사는 <u>환경위생과장</u> 이 되며 위 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생 략)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u>1명</u> ② <u>기금업무담당과장</u>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u>매회계연도</u> 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 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 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u>회계연도</u>
제12조(회계공무원) (생 략)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	제12조(회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추가(안 제3조제2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8일

포항시 조례 제 1070호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본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 제2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10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한다.
- 제3조 본문 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제 호	5	
수 신	.]	
제 목	7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갑) (처분기관보관용)

(0)					(FIE: 10=00)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이버나들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법률		
	위반내용			'	
	부과금액		부과일자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납부기한		
 특기사항					

담당자 확인

168mm×118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을) (처분대상자 통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제 호 성명 생 년 월 일 위반행위자 주소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법률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일자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납부기한

담당자 확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포 항 시 장 (인)

168mm×118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과태료	납투	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Ę	납부금액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
		위의 금액을	납부합	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년	월	일		
					포 항 시	· 사 장 (인)
(정)	······	 태료 납부	···· 영수	 핔 통지	서 	 (처분기관 통보용
	•			납부금액	•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I
'	<u>.</u>	위의 금액을 영수하	·였기에	통지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무)		 과태료 닙	 남부 (······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납부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	 남니다.		
'		년	월	일		
	납부기한					
수납일부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취급자 인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당초 납부기한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대상자	성명 주소
취소(변경)내역	취소사유
	부과금액
	취소(변경)금액
	차액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부과기준	납부 통지서 번호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 금액
VIE-11-1		
	처분사유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유와 같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동보서

호	제
신	수
신	발
	신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자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기간 이의제기일자

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번호	고지서	과태료	독촉장	납부	기한	금액	납부의	리무자	과태료	이의제기	
월년면오	번호	처분통지일	발부일	당초	독촉	(천원)	성명	주소	납부일	이의 제기일	법원 통보일

※ 서식은 A4 횡으로 작성할 것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8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위반자	상호(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위반행위	발생일시 발생장소 위반종별 위반상황(서술) 증거물 확보 여부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동영상, 기타 기타 참고사항	ł)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주 소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9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 및	! 사실 확	인 내역		과태료	^분 고지	신고 포성	상금 지급
비그건조	нте	위반업소명	대표자	위반내역	확인통보일	회보일	일반납부	감경납부	포상자	포상금액

작성방법

-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 4.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위반자	상호(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발생일시	
	발생장소	
위반행위	위반종별	
기간행기		
	위반상황(서술)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가 년 월 일 신고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사실 확인 회보서

신고번호

신고번호 제 호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년 월 일

확인자 포항시 구 읍 \cdot 면 \cdot 동 번지

나머지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감경 처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OIHLAIĀL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법률		
	위반내용				
기데르	부과금액		부과일자		
과태료	감경 후 금액		납부기한		
특기사항					

담당자 확인

168mm×118mm[일반용지 60g/m²

과태료 감경 처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읔) (처분대상자 통지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이비나는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법률		
	위반내용				
기테르	부과금액		부과일자		
과태료	감경 후 금액		납부기한		

담당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지정된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인)

168mm×118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u> </u>						2011. 11.
■ 포항시 1회용품 사용	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 과태료부과 및 신고3	돈상금 지	급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병)	과 E	돼료 납부서	(감	경대상자	용)	(수납은행 보관용
			L I	납부금액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	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년	월	일		
					포 항 /	니 장 (인)
(정)	과태료 닡	납부영수필	통지	 서(감경	대상자용)	(처분기관 통보용
				날부금액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C	위의 금액을 영수하	·였기o	∥ 통지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년	월	일		
					포 항 /	시 장 귀하
(무)	과태료	로 납부 영수	~증(감경대성	·자용)	(납부자 보관용)
			납부	금액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위의 금액을	· 납부함	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일부 인		년	월	일		취급자 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9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ł.					
							년	월	잍
보고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귀하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위와 같이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소속 직급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피신고자의 의견에 대한 것) 담당공무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위반장소 위반종별 상황설명 증거물 기타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한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구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 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포항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
제3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법 제4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 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제3조(의견청취 등) <u>제</u> 42조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혅 행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 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과 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 당한 것임에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 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 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 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u>해당</u>
<u>제3조에 따른</u>

- ② (현행과 같음)
- ③ ---- 제1항에 따른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현 행	개 정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u>각</u>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식품위생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0조(신고자) ① (생 략)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 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 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0조(신고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2명</u>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 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 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 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혅 행 개 정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 ----각 호의 어느 하나 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각 호의 어느 하나----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9조)
-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을 "제2조제12호"로 법 조항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
-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8일

포항시 조례 제 1071호

제855호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본문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2조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해당"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9조제1항에서"를 "제2조제2호가목(3)에서"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타"를 "별표 3에 따른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시장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그 밖에 시장 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9인이내"를 "9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인"을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폐기물</u>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 제4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산정하되 부지매입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

현 행	개 정
1. 소각시설의 경우 : 1일발생 대 상 폐기물량(톤)×80제곱미터× 당해 택지 등의 제곱미터당 조성 원가 2.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 : 1 일 발생 대상 폐기물량(톤)×60 제곱미터×당해 택지 등의 제곱 미터당 조성원가 ② (생 략)	1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법 <u>제9조제1항</u> 에서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0만제 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u>제2조제2호가목(3)에서</u>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기금분임운용관은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 시설담당주사가 된다.②(생략)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되,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포항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업무담당국장

개 행 정 혅 **제9조(기금의 사용)** ① 영 제27조제1 제9조(기금의 사용) ① -----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 ----- 별표 3에 따른 그 밖의 업은 다음과 같다. ______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과 법 제17조제2항의 4. 그 밖에 시장과 법 제17조제2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 항에 따른 -----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협 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u>그 밖에</u> -----3. <u>기타</u>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 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1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1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②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이내-----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 의원 2인 2. ----- 명 3. 폐기물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 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인 이내 --명 ----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4. ----- 명 ---

혀 행 개 정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내지 제 -----제2호부터 제4호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 3. 그 밖에 -----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 항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① ----- 회계연도----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 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② 제1항에 따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2.해당-----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 3. 그 밖의-----_____ 정 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법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

현 행	개 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은 포항시 일용인 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u>영 제7조의</u>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u>영 제7조에</u>
<u>규정에 의한</u> 입지선정위원회와 <u>영</u>	<u> 따른</u>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	<u>영 제18조에 따른</u>
체의 위원 및 제11조의 위원회 위	
원에게는「포항시 각종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5조)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을 "제2조제2호가목(3)"으로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8일

포항시 조례 제 1072호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 5년마다"를 "5년 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2인"을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 출장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u>매 5년마다</u>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 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u>5년 마다</u>
제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 한다.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 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경북지원포항・울릉출장소장,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장으로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8조(위원의 임기)

현 행	개 정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위원은 <u>당</u>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u> 기간으로 한다.	<u>해당</u> <u>남은 기간</u>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 을 둔다. ② (생략)	제11조(간사) ① <u>1명</u> ②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포항시 조직개편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관계 기관의 기관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으로 업무소관이 변경된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 하고, 2011. 6. 15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 출장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 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장의 명칭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1 - 1027 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1.11.03

- 1. 재등록공인 최초 사용일자 : 2011. 11. 10
- 2. 재등록 및 폐기사유 : 공인마모로 인한 폐기 및 재등록
- 3. 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 5. 전자이미지 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3
- 6. 전자이미지 페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4

□ 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붙임1)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고
포 항 시 북구기북 면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환여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い場別の記述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양학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いる思慮の過度の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要を必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남구제철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 폐기 공인명 및 인영(붙임2)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고
포 항 시 북구기북 면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환여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양학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남구제철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 전자이미지 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붙임3)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고
포 항 시 북구기북 면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の場合の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환여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望る明明の記述の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양학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の認用である。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남구제철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の変形でいる。	공인마모로 재등록

□ 전자이미지 폐기 공인명 및 인영(붙임4)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고
포 항 시 북구기북 면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환여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북구양학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
포 항 시 남구제철 동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재등록